

구미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1. . .
발 의 자	김재우 의원 외 11명

구미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재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1. . .

발 의 자 : 김재우 · 권재욱 · 김낙관 · 김영길
 : 김태근 · 송용자 · 안주찬 · 윤종호
 : 이지연 · 장미경 · 최경동 · 홍난이
(12인)

1. 제안이유

구미시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(안 제3조)
- 나. 사업 계획에 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정산 보고에 대한 사항(안 제5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15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다.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8.27.~9.3.)결과 의견 없음

구미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양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구미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조례에서 구미시 재향경우회(이하 “재향경우회”라 한다)란 「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」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구미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 대상사업 등)

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범질서 확립 및 그에 따른 홍보사업
2.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
3. 아동·청소년의 폭력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.

제4조(사업계획 등의 승인)

재향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5조(정산보고 등)

- ① 재향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재향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)

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15조(재정)

-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

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구미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안 제3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, 제2호에 해당함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조례안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고 있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우며, 매년 1억원 미만을 지원해 왔음.

- 구미시 재향경우회 지원내역

(단위 : 천원)

연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예산	5,000	4,970	4,450	4,000	4,000	4,000	4,000	4,000	4,000	4,000

4. 작성자

총무과 자치행정계 김정록(054-480-6768)